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(전문위원: 김경숙)

※ 검토보고서 전문 [붙임 1]

4. 질의 및 답변 요지: 「생략」

5. 토론 요지: 「없음」

6. 심사 결과: 「원안가결」

7. 소수의견 요지: 「없음」

8. 기타 사항: 「없음」

- 붙임 1. 「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 검토보고서 1부.
2. 「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 1부.

4. 검토의견

가. 관련 근거

- 「지방자치법」 제125조에서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였으며,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8조에서 지방자치단체 장은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기간 후에 종료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한시 기구를 설치·운영할 수 있고 존속기한은 3년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였음.

나. 입법의 취지

- 한시기구의 존속기한 만료일 도래에 따라 다른 행정기구 조정

다. 조례안의 주요내용

- 안 제6조의2제1항에서 현안사업추진과를 삭제함.

5. 종합검토의견

- 본 개정조례안은 한시기구인 현안사업추진과의 존속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행정기구를 조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예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□ 지방자치법

제125조(행정기구와 공무원) ③ ~ ⑥ (생략)

-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.
-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□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

제8조(한시기구의 설치운영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기간 후에 끝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한시기구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 이 경우 한시기구 설치시에는 기존의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.

- ② 본청에 한시기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기존의 보조기관과 담당관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의 중요성과 업무량이 있어야 한다.
- ③ 한시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1년 이상의 업무량이 있어야 한다.
- ④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은 3년의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- ⑤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의 연장은 사업추진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회에 한한다.

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556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26. 3. 3.

제 출 자 : 평 창 군 수

1. 제안이유

한시기구 존속기한 만료일 도래에 따라 자치법규 개정을 통해 행정 기구를 조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한시기구(폐지) : 1과 1팀(현안사업추진과 보상팀)

1) 존속기한 : 2024. 1. 1. ~ 2026. 6. 30.(2년 6개월)

나. 기구 조정사항

구분	총계			본청			직속기관		사업소		의회		읍면	
	국	과	팀	국	과	팀	과	팀	소	팀	과	팀	읍면	팀
기 존	3	36	172	3	19	90	7	32	1	4	1	3	8	43
변 경	3	35	171	3	18	89	7	32	1	4	1	3	8	43
증 감	-	△1	△1	-	△1	△1	-	-	-	-	-	-	-	-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별첨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

1) 입법예고 : 생략

-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38조

2) 규제심사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[기획예산과-1224(2026. 1. 16.)호]

3) 부패영향평가 : 부패유발요인 없음 [기획예산과-1224(2026. 1. 16.)호]

4) 성별영향평가 : 개선사항 없음 [가족복지과-2555(2026. 1. 16.)호]

5) 법제심사 : 적정 [기획예산과-2004(2026. 1. 29.)호]

6)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: 원안의결[기획예산과-2568(2026. 2. 9.)호]

평창군 조례 제 호

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의2제1항 중 “환경과, 현안사업추진과”를 “환경과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6조의2(도시안전국에 두는 과) ① 도시안전국에 도시과, 허가과, 건설과, 안전교통과, 산림과, <u>환경과, 현안사업추진과</u> 를 둔다.	제6조의2(도시안전국에 두는 과) ① ----- ----- <u>환경과</u> -----.

관계법령 발취

□ 지방자치법

제125조(행정기구와 공무원)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.

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③~⑥ (생략)

□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

제8조(한시기구의 설치운영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기간 후에 끝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한시기구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 이 경우 한시기구 설치시에는 기존의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.

② 본청에 한시기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기존의 보조기관과 담당관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의 중요성과 업무량이 있어야 한다.

③ 한시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1년 이상의 업무량이 있어야 한다.

④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은 3년의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⑤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의 연장은 사업추진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회에 한한다.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(제3조제5항 관련)

1. 비용발생 요인

- 비용발생 요인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5항제1호

3. 미첨부 사유

- 본 의안의 시행으로 추가 발생하는 비용이 없음

4. 작성자

작성자	평창군 행정담당관 이시균
연락처	(033) 330 - 2210